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19차	일자	2021.04.12. 18:3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참고자료: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X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0	0	X	0	0	10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중간고사 간식사업 신청 진행 완료. 내일 중 기프티콘 발송 예정. 학생회 내부에 시설개선 TFT 조직 완료. TFT를 중심으로 서라벌 노후 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구글폼 창구 제작해서 게시 완료.
약학대학	-
예술대학	간식사업 준비 중.
의과대학	-
인문대학	체육대회 종목과 진행방식 논의 진행 중. 오늘 중간고사 간식사업 포스터 공지 완료. 성평위 인권 문화주간, 중앙 퍼레이드 연대요청서 제안 검토 완료 후 참여하기로 결정.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간식사업 4/19(월)에 신청 받을 예정이고 메뉴는 아직 미정.
동아리연합회	-

2 보고안전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 총학생회실 상주(4/12~4/26) 중간고사 기간 동안 중단

중앙집행위원회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6주차 진행 중
	(연대사업) 학내 노동자 연대 영상 기획 중
	(일상복지) 중간고사 응원 이벤트 진행 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학문 연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 마감
	(홍보소통) 20학번 대상 푸양 힐링키트 신청 마감, 푸양 2차 굿즈 '푸레젠트' 15일부터 선착순 모집 예정, 21학번 대상 새내기 자료집 마무리 단계
산하위원회	(성평위, 장인위) 학생대표자 대상 인권교육 준비 중
	(성평위, 인복위, 장인위) 인권문화주간 기획 준비 중
	(장인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이벤트 준비 중

3 논의안건

1.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및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논의

- 내용 개정 관련 중운위 요구사항 수립

총: 금차 회의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중운위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대학 본부와의 TF 라든지 면담을 요청을 해서 개정을 할 예정이다. 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학생회장님은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란다. 우선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부터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이다. 저희 단운위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2,3,5조에 있는 총여학생회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직책 중 하나인데 특정성별만 가능하게 하는 교내 직책을 두는 것이 현재 시대에서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해당 내용 말씀드린다.

총: 해당 총여학생회장의 경우에는 예전에 총여학생회가 있을 때 적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 따라서 공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는 총여학생회장의 직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총여학생회장 관련 조항 말고는 따로 의견 없다.

부총: 의견 말씀드려도 되는지? 목소리 들리시는지?

총: 네

부총: 일단 이 선거지도내규가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지원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번에 담당자께서도 말하신 만큼 4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단대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등록 여부라든지 평균 평점 여부라든지, 특히 평균평점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평균평점을 못 넘으면 그냥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분리해서 적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조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 생각이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부총: 방금 드렸던 의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4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학생이라는 것만 명시가 되면 나머지 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조항은 실제 학생자치기구 선거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 말해도 되는지? 성적에 제한이 있는 거는 그대로 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 4차 학기 이상 등록 이런 지점이나 징계사실 이런 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인문.정: 제 마이크 혹시 잘 들리시는지?

총: 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인문대학은 일단 제 2조 선거지도내규

총: 회장님 앞부분이 끊겨서 처음부터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인문.정: 지금은 괜찮은지?

총: 지금도 끊긴다.

부총: 계속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채팅으로 의견 주셔도 된다.

인문.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 그러면 인문대 회장님은 채팅으로 의견 남겨주시고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시는게 좋겠다.

경경.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여학생회장 부분은 동의하며, 지금까지 발동되거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규와 각 학생자치기구의 세칙이 좀 다른 사항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규 내에 각 자치기구 세칙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기구의 세칙을 따른다라고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린다.

총: 경경대 회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혹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경경.정: 지금 내규 내에서 각 학생자치기구에 세칙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내규와 세칙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규 자체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없기 위해서 각 자치기구별로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각 자치기구의 세칙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규 자체에 각 자치기구의 세칙을 따른다고 내규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부총: 그러니까 지금 선거시행 세칙을 우선 적용하는 사안이 후보자 등록이랑 선거운동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사항에서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모두 달자는 말씀이신지?

경경.정: 네 단서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이다. 저는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동의하고 만약에 그 조항이 추가된다면 이 4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부총: 아까 인문대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채팅가능하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일단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신 것은 모든 각 조항에 학생회에서 정하는 선거시행세칙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기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먼저 내주시고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실 때에는 추

가로 내주시면 회의 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다.

사범.정: 사범대 경경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그러면 총여학생회 삭제 그리고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학생자치에서 정립된 선거시행세칙을 우선적용하라 라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 것에 대한 두가지 내용은 모든 대표자분들이 찬성을 해주신 것 같고 일전에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4조 폐지와 축소와 관련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제가 의견을 먼저 냈는데, 4조에 세칙을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사실 여기 있는 문장 자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원팀에서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문장이라면야 뒤도 상관없을 것 같다.

총: 네 알겠다. 그러면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지?

부총: 네. 단서조항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

총: 네 알겠다.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인문대 학생회장단께서는 채팅 준비되시면 채팅창을 통해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이제 잘 되는지?

총: 네 잘 들린다.

인문.정: 네 다행이다. 혹시 지금까지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한번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죄송하다.

총: 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장 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사회 내에서 정립된 선거시행 세칙을 우선적용할 것, 이것을 이제 단서조항에 달자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는데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선거지도위원회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학생사회 선거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는 자체적으로 각 세칙에서 징계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 징계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학생자치 선거에 학교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자치 침해라고 생각이 돼서 제 2조는 완전 삭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4조 같은 경우는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그다음에 전체 이수 학업 성적 평균이 2.0이상인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현재 시대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입생이 선거를 나왔을 때 학우분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건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평균평점 2.0이상인 자도 더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4조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인문대학 선거시행 세칙과 맞지 않는데, 아까 나온 단서조항 같은 게 조금 추가가 되면 보안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한다. 그래서 보완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도 지금 후보자 등록 나항을 보시면 단과대학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학생회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도 수정이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희는 학생자치기구가 선거를 하는데 학교가 선거지도 내규를 만들어서 개입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제7조, 제8조 같은 경우 그리고 제9조 같은 경우는 학교측에서 학생회 선거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남기고 저희는 사실은 앞에 부분같은 경우 제2조, 제4조, 제5조 같은 경우는 완전 폐지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단서조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총: 네 인문대 회장님께서 총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지도위원회의 모두 삭제, 그리고 4조의 삭제, 그리고 단대 회장들이 출마할 때 필요한 학과장의 추천서 삭제 이렇게 총 세 개를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

부총: 세가지 중에 4조는 일단 세칙을 우선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총: 인문대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인문.정: 네 사실 세칙을 우선시킨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어쨌든 저희 세칙을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접촉되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다.

총: 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추천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공대이다. 5조 나에 있는 추천서는 저희도 삭제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대에서 말씀해주신 9조와 관련해서는 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를 감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 그런데 전체삭제를 하기에는 그게 행정지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살려둬야 할 것 같아서 2조를 삭제하고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은 선거에 필요한 이제 비대면이다보니까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서 선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인문.정: 공대 회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고 사실 저희가 학생회 선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작년 온라인 선거 같은 경우는 교지팀으로 지원을 받았고, 선거인 명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행정적 지원을 저희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2조를 삭제를 하고 아까 공대 회장님의 말씀처럼 행정지원을 하는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7조에 투개표처럼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 명부는 학교가 제공한다 이렇게 각 조항별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같은 경우는 따로 기술훈을 해놓으면 조금 더 뭔가 행정 지원을 조금 더 명목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저는 선거지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행정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총: 사실 이 부분도 대학 본부의 담당자와 논의를 해야지 결정이 나는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거관리지도위원회와 행정지원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차후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추천서는 다들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4조도 단서조항을 달아버리면 회칙에 접촉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다 라

고 말씀해주셨고 다른 대표자분들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근데 제가 말씀드린건 죄송하다 저는 제5조에 추천서 1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굳이 성적증명서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성적증명서도 사실은 왜 굳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뭐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학생대표자가 안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어느 정도의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선거를 치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적증명서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후보자 등록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그냥 첫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학생회에서 정하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이거 한 문장이면 저는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각 선관위에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그 서류들을 교지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삭제를 하고 학생회에서 정하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이 문장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 후보자 등록이라는 조항이 의미가 담길 것 같다.

사과.정: 사과대 저희 의견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 제2조 선거지도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그 행정지원에 대해서 따로 조항을 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인문대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지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빼도 행정지원을 계속 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학교 측과 한 번 더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제4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제4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항에서 각 학생회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 학생회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를 왜 해당 규정에 삽입을 해서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 규정을 왜 삽입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제5조 후보자 부분에 있어서도 인문대 의견과 동의한다. 이상이다.

부총: 제 개인의견을 하나 더 남기자면 위에 있는 각 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10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조항인데 사실 이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내규의 맥락만 봐도 맥락 자체만 봐도 학생지도위원회가 아니라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학생회의 선거시행 세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 위의 조항에 있는 맥락에 있기 때문에 기타 조항에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원칙적으로 학생선거 관련사항을 지도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저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할지는 문장이 생각이 안나는데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란다.

총: 네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부총학생회장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10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인데 사실 이게 약간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학생회장의 말씀처럼 학생지도위원회에 대한 학교 측과의 논의가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조항을 개정을 한다면 저는 그냥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학과 학생회에서 따르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뭐 이런식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네 그러면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지도위원회는 선거지도관리위원회와의 그러한 관계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네 그러면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로 총학생회장 단어 삭제 그리고 각 조항에 선거시행세칙 우선적용 단서조항 달기, 그리고 4조에 단서조항 그리고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조항 삭제, 후보자 등록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적용 이외의 부분 삭제, 선거지도위원회 삭제 및 행정지원 규정을 별도로 삽입을 하자 이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와 논의

가 필요할 것 같고 10조 또한 선거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담당자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추가의견 없으면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경경.정: 저 5조 성적 증명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면 하는데 피선거권의 기준으로 학점을 기준으로 관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학교로 인한 퇴학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방지하는 조항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총: 네 성적증명서는 학교로 인한 퇴학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증명서 제출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다.

부총: 저는 성적이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사항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학교로 인한 퇴학같은 경우는 유권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라면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성적증명서 자체가 문제가 된 거라면 그냥 학교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그럼 4조에서 그 각 항을 삭제하지 말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뭐 평균평점 2.0 이상이 자 이거를 방금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수정을 하고 밑에 나항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총: 4조를 개정하자는 예대 회장님의 말씀이였고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이다. 성적증명서 일부 내용은 학사경고 때문에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에 또 어떤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대 회장님 말씀처럼 학사경고가 들어가는 말로 어느정도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5조의 2번 성적증명서를 지우고 4조의 2번에 있는 가에서 2.0이상이 아니라 뭐라해야 할지 학사경고가 2번 미만인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몇 번 학사경고이면 퇴학이고 이런 걸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총: 제가 알기로는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있는데 성적증명서를 받았는데 학사경고로 인한 퇴학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학생지원팀에서 후보자로 못나오게 하는 프로세스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 서류를 학생처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한다라고 되어있고 성적증명서 1부가 있는데 이게 뭔가 교학지원팀에서 성적증명서를 보고 위험이 있다 퇴학이 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

총: 저도 사과대 회장님에 동의를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게 어쨌든 학교가 학생회 투표를 위해서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의 입장에서 당장 다음학기 퇴학당할 사람을 위해서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에는 학교측에서도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하다.

부총: 저는 사실 절차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통하게 중요한 거는 그런 퇴학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가 그런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시하는 조항이어서 예를 들면 학사경고로 인한 퇴학의 소지가 없는 자, 정확히 쓰면 징계횟수가 몇 회 미만인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원칙상 맞지 않다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각 학생자치기구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판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과대 회장님의 말씀이랑 총학생회장님의 말씀에 생각을 해봤는데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이 정말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조금 더 동의를 하고 싶다. 학교가 당연히 그런 개입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주고 학교 입장에서 1년을 같이 일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년을 다 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개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저도 평균 평점의 부분이 임기를 하다가 임기 중간에 퇴학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평균 평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라면 그 조항이 있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교학지원팀이 판단하는 게 조금 이질적이게 느껴져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 저는 사실 만약에 1년 동안 함께할 총학생회장인데 F를 3번인가 4번인가 받으면 퇴학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게 1학기에도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F를 갑자기 3번이나 4번을 받으면 2학기때 퇴학이 돼서 임기를 다 못하는 건데 과연 이 조항이 그걸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조항을 유지를 하면서 그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존재하는 거라면 아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체 평균 학업 성적이 2.0이상인 자 라는 워딩 보다는 뭐 F를 몇 번 이하로 받아서 퇴학의 위험소지가 없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네 F의 개수보다도 학교의 기준이 1.78이었나 1.8 얼마였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학교의 기준이 1.78이라고 가정했을 때 1.78의 학점을 받은 학기가 3학기가 된다면 이제 퇴학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개정을 하면 되겠다.

자연.비: 자연대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학교 자체로 인해서 정말 임기를 채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미리 짚어 보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각 학생회의 대표로써 손색이 없는 자의 항목에 학교로 인해 임기 1년을 채우기 위험한 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항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좀 더 자세히 학교나 이런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걸로 워딩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총학생회장님이랑 공대 회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학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한번 검토하는 정도의 조항은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내겠다. 임기 중에 성적은 어차피 임기 중에 한 번 1학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학교를 3번 맞으면 퇴학 처분이니 여기에 평균 평점 2.0이상인 자가 아니라 학사경고 2회 미만인 자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경경대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방금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워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간호.부: 간호대 경경대 회장님 말씀에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그러면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의견 없으시면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부총: 그리고 만약에 4조 조항을 그렇게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에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남기는 건지 아니면 아까대로 부분은 제하고 4조에 전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인지?

통공.정: 사실 그걸 확인하려면 제출을 해야 맞는 거 아닌지?

예술.정: 저도 제출하는 것에 그렇게 반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경경.정: 경경대도 성적증명서 제출이 학사경고 확인 목적이라면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같은 의견이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일한 의견이다.

사과.정: 사과대도 동일한 의견이고 그 아까 처음에 사과대 의견 드릴 때 제4조 2항의 2번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라는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라는게 좀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왜 개정하는지가 좀 정확히 담겼으면 좋겠어서 뭐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임기기간 내에 퇴학 위험이 없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명확한 워딩으로 조금 규정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린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해당 내용 동의하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학고를 위한 것이라면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총: 네 그러면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장의 워딩은 참고를 하여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학생 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에 대한 추가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이다. 5조에 보시면 5조 한번만 보여주실 수 있는지? 5조 2번의 2번을 보시면 1개 게시판에 2매 이내로 부착이라도 제한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항들은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게시판 도배의 방지를 위해서 그냥 모든 조항에 게시판 하나당 몇 매라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라고 공대에서 의견이 나왔다.

인문.정: 네 인문대학은 단운위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4조에 3항을 보시면 저 내용 자체를 전부 이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자보를 검인할 수 있는 제도라서 이것에 대한 완전 삭제를 주장했었는데 저희 단운위에서 논의 한 결과 두 번째를 보시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단운위내에서도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게시물로 부착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항, 3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인문대학의 입장이다. 상업적 또는 정치적 내용, 특정인 비방 등 기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삭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총: 우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1번 상업적 또는 정치적 내용 저번에 담당자 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업적이라는 것은 우선 학교 학생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상업적 포스터를 붙힐 가능성도 존재하고 정치적 내용이라 함은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검인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치적 내용으로 검인을 한 경우는 홍콩사태 단 한번이라고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해당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번과 같은 내용도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문장을 좀 표기를 수정한다든지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경경.정: 경경대 단운위 논의내용 말씀드리겠다. 저희 단운위 내에서도 해당 내용 삭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차라리 추후 문제 발생 시에 판단이 용이하도록 저번에 프리홍콩 사태와 같은 과거 거부사례들의 자료를 모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과 지금 지난번 회의 때 담당자님께서 너무 당연해서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 하셨지만 당연한 내용일수록 시행세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검인 거부 시에 학생들이 이의제기 및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세칙에 추가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의견 낸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이다. 공대도 우선은 4조에 3번 워딩이 바뀌더라도 삭제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3조에 6번에 2번을 보시면 외부단체가 게시를 하고자 할 때 유관부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 조항이 삭제되면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예 삭제하기보다는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도 좋고 아니면 이전에 말했듯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사범.정: 사범대 의견 드리면 사람들이 단운위 논의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삭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야기가 됐고 아까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번같은 경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1번, 2번은 유지를 하되 3번 같은 조항 같은 경우는 약간 워딩 정도로 수정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예술.정: 예술대도 3번 같은 경우만 조금 수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자연.비: 자연대도 워딩 수정 정도로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 단운위 의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사회과학대학도 제4조에 삭제가 기본의견이지만 학내 게시물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4조에서 3항정도가 삭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학생자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대자보의 성격과 상업적인 홍보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업 홍보물 회칙과 대자보 관련 회칙을 구분해서 명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제3조 게시범위에서 홍보물의 예시가 지금 나열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자보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를 해서 학생자치에서 목소리를 낼 때에는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시물 관리가 필요하다면 부착은 학우들이 자유롭게 하되 부착 후에 학지팀에 보고하는 형태로만 이뤄졌으면 좋겠다. 만약 이 부분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그 대자보랑 사업 홍보물에 대한 성격을 이제 제3조 게시범위에서 구분을 해서 대자보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만 바뀌어도 좋다. 이상이다.

총: 우선 4조 3항에 대한 삭제 여부는 많은 대표자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고 이에 사과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다. 대표자분들의 의견도 여쭙겠다.

부총: 저는 일단 굉장히 구체적으로 4조 3항을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내용이라고 하면 프리홍콩 사태를 예시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면 정치적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지 그 일반적인 정치적인 의견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특히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한 곳 차이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비방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고 하면 게시자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지 학교에서 중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 관련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방과 비판의 요지를 검인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사실 부총학생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사실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요지가 대자보를 만약에 누가 붙였고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실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지 학교에서 이걸 굳이 개입을 해서 뺐다 붙였다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처음에 완전 삭제를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 네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학우간의 법적문제에 대해서 학교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내겠다. 경경대도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선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별로 있지만 그것이 대상에 있어서 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학교차원에서 그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내용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

부총: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와 같이 구체적인 단어를 기술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일단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를 처음부터 이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비판인지 비방인지 복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최대한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과.정: 사과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동의하고 해당 3호 조항이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당사자간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해당 조항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던지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연.비: 자연대도 의견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우선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자세히 기재하는 것 같은 경우는 1번에서 상업적 또는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상업적 어떤 정치적 내용이 거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명시하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있다. 해당 내용 동의는 하나 너무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그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너무 검열을 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인 거부 시에 학생들이 이의제기 및 의견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보호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없을지에 대한 의견이다.

예술.정: 그런데 그 부분은 세칙에 넣는다고 보다는 지난번에 학생지원팀 주임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유같은 거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당연히 만드는 게 맞다고 얘기해주신 것 같아서 그걸 세칙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경경.정: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운위 내에서는 당연하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해당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칙에도 기재가 되어야 하며 단순 이의제기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충분하게 학생자치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총: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문장을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일단 경경대에서 제시한 것처럼 검인거부시 학생회 이의제기와 의견표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고 이제 1,2,3항을 하나씩 볼 때 상업적 내용은 그대로 뒤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이고 정치적 내용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 정도로 구체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정한 비방같은 경우는 전항과 합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아까 사과대에서 말씀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남은 게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의제기와 의견표출권이 보장된다고 하면 조항 자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된 의견으로 말씀드렸다.

총: 네 부총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은 동의, 비동의 의견과 더불어서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제가 제 의견에 추가를 하겠다. 기타 면학 분위기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의견표출이 보장되면 있어도 상관없겠다는 것은 명시된 조항 외에 추가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문장이 있다면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인문대학 동의 비동의 여부 밝히면 일단 부총학생회장님이 제시해주신 방안이 가장 그나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문대학은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고 비동의 의견을 밝힌다. 일단 저희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다. 학교

에서 물론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보호해야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의 보호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대학생이면 각자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어쨌든 검인하는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표현 자체를 검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총: 저는 의사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타인의 자율권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총학생회장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부총학생회장님 내용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부총학생회장님에 동의한다.

자연.비대위: 자연대도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통공.정: 공대도 면학분위기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삭제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정인의 비방은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총: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본인 하신 말씀을 토대로 채팅창에 올려주실 수 있는지?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표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위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사실 면학분위기 저해라는 것도 굉장히 해석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타 사항 이렇게 남긴다든지 기타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문장을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사과.정: 논의가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 사과대 추가의견 있다. 처음 드렸던 의견의 맥락인데 저희는 학생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대자보랑 상업적인 성격의 홍보물이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둘을 같은 시행세칙을 통해서 검인을 하는 게 학생자치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학생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대자보의 경우 홍보물에 관한 세칙을 거치지 않고 게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싶다. 이게 제2조 정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제3조 게시범위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는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학교와 함께 논의를 해 봐도 좋고 지금 중운위에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총: 우선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하게 된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상업적 정치적이든 개인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대자보는 해당 시행세칙에 근거해서 검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쓴 대자보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도 검인을 받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도 검인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쓴 대자보 자체는 어떠한 검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과대 회장님의 의견이신지?

사과.정: 약간 대답하기 애매한 게, 제 의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사실 논의를 뒤엎는다고 생

각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그대로 반영을 하되 대자보에 관한 세칙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다. 이해하는 범위가 사실 저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수정과 동시에 대자보에 관한 세칙도 넣어서 홍보물과 대자보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하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어떤 대자보든 다 붙였으면 좋겠다, 명예훼손이든 뭐든, 이런 의미랑 다루기는 했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총: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올려드리겠고, 4조3항은 제 의견을 정리하라고 하셔서, 제 의견이다.

총: 지금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의견과 사과대 회장님은 정리가 되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저는 해당 시행세칙이 전체적으로 규제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권이나 의사표현을 보장해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논의를 뒤엎는 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공존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흑백의 논리로 가는 것 같아서, 대자보에 대한 세칙이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의 세칙과 전혀 공존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적절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아서, 네.

사과.정: 다른 중운위원분들도 혹시 공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지?

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4조를 개정할 때 대자보와 홍보물 모두 포함 된 제작물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자라고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사과대 회장님께 대자보 규칙을 따로 만들면 지금까지 대자보, 홍보물과 같이 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자보는 또 따로 빠져나가는 것인가 하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

사과.정: 네. 사실 검해서 논의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홍보물과 대자보를 함께 취급해도 괜찮다는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총: 혹시 다른 대표자분들은 대자보랑 홍보물이랑 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4조에 대한 내용들은 홍보물에 한해서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인문.정: 인문대학은 대자보, 홍보물 같이 한다고 해서 전부삭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사과.정: 저희도 지금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사과대 단운위 의견도 분리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자보랑 홍보물이 성격이 같지 않고 이우학 주임님이 말씀하실 때도 학내 상업단체랑 단체가 정말 많고 2019년도 대면상황일 때는 1년에 3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희 단운위에서는 홍보물과 대자보의 성격이 다르게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었고 대자보만 따로 하나의 조항으로만 뺐으면 좋겠다, 대자보에 관련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대자보에 관련해서는 시행세칙에 의한 검인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정리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올려주신 이 내용 그대로 가도 괜찮다. 굳이 빠지 않고.

통공.정: 공대는 채팅에 있는 내용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질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대자보 관련 조항 별도 마련이 대자보 같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조항인 게 맞는지?

부총: 제시해주신 단위에서 설명해주셔야 겠다.

사과.정: 사실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홍보물과 대자보를 혼용해서 검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아무튼 두 게시물의 성격이 명백히 다른데 왜 홍보물과 대자보를 같이 검인을 하는지 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시행세칙에서 제4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단위 의견이 있었다. 처음에 단위요구안을 작성할 때, 그런데 말씀해주신 부분들로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대자보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를 해서 대자보에 대해서만 시행세칙 상에 검인을 받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이게 중운위의 현재까지의 논의를 역행하거나 중운위원분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신다면 첫 번째 내용은 빼도 좋다. 저희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빼도 괜찮다.

총: 아마 대부분의 대표자분들께서 홍보물의 범위를 대자보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표자분들께서 3조에 대한 의견만 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내자면 우선 대자보와 홍보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세칙 내 따로 명시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나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 혹은 개인의 사생활 훼손이나 명예훼손 및 이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같은 경우에는 세칙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예술.정: 예술대 경경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는 홍보물이랑 대자보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다. 대자보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특성에 따라 존중은 하지만, 부총학생회장님이 써주신 상업적 내용, 정치적 갈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내용 등은 이게 규제가 아예 안 되어있으면 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달 전에 아시겠지만 공대 내에 건축학부에서 특정 학생이 공대학장님을 저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썼다. 그 당시에 검인이 다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중앙인이든 에타든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가 억압을 하면서 어떤 제약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대자보 역시 어느 정도는 이런 제약을 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써주신 세 가지 내용을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세칙 내에서 홍보물과 대자보를 분리시킨다는 내용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부총: 그러면 지금 별도로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게시 범위 내에 대자보를 게시할 수 있는 홍보물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아니면 이걸 사과대에서 제안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자보를 게시범위 내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해주실 게 있으시면

사과.정: 사과대에서 처음에 대자보랑 홍보물을 분리해야겠다고 제안을 한 건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함, 학생사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부여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게시범위에 대자보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홍보물에 포함된다고 하면 오히려 대자보의 표현의 자유 범위가 더 위축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예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자보는 시행세칙의 검인을 받지 않

는다라는 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본래 의도였는데 만약 3조에 홍보물에 대자보도 들어간다는 조항만 삽입을 해버리면 대자보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다. 이상이다.

총: 그러면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동의여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 동의라기보다는 제안자가 철회를 하신 만큼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동의한다.

통공.정: 같은 의견이다.

(이하 동의의견)

총: 그러면 3조에 대한 개정은 없는 것으로 하고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 진행하도록 하겠다. 추가 의견 있을지?

총: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재정정보공개 학교본부 교섭 관련

1. 본부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총회 개최 7일 이내에 2020 회계연도 추정결산과 임의장학기금의 세부내역과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2. 본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을 중단하라.
3. 본부는 학생과 협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새로 작성하라.

- 교섭 방향성 논의

- 교섭 방식 논의

총: 재정정보공개 학교본부 교섭 관련된 안건이다. 총 세 가지 안건이 있다. 학교본부와 어떻게 교섭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과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제가 일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요구안을 작성을 하고 주무부서 간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는 개인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요구안을 쓰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방향성이 저희가 이 의제를 새로 설정해서 학교랑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생들의 요구를 받은 사항을 저희가 이행하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정의하자면 협의보다는 요구의 측면 관철의 측면으로 방향을 정해서 방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낙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 해라, 하세요 이런 거 있지 않은가.

인문.정: 인문대학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통과된 세 가지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있다. 무엇을 학교 측에서 밝혀줘야 하고, 관행을 중단해야 하고,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거라 교섭을 들어가기보다 일단은 중운위 차원에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그것이 결렬되었을 때 중운위 차원의 행동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만약에 교섭이 들어간다면 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셔서라

통공.정: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그 답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전에 저희가 등록금 환불 얘기할 때 교학부처 간담회와 행정부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음을 못한다. 녹음을 못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그대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총학에서 따로 또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게 되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온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답변을 그대로 원본을 공개를 하는 게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나을 것 같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인문.정: 의견이 있다기 보다는 공대 회장님 말씀에 조금 저희의 생각을 더하고 싶다. 공대 회장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는데,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면 학교 측에서 사실 그 답변기한을 잘 안 지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를 들어 등록금환불협의체 개의를 요구했을 때도 그 협의체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 학교에서 답변도 계속 미뤘었고, 그래서 차라리 일정을 잡아서 대면으로 하고 그 대면에서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아니면 서기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했을 때 학교 측의 답변이 늦어질 수 있어서 대면으로 하고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전체 내용 동의한다.

총: 동의한다는 것이 인문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1차적인 목표는 간담회 형식이 되겠고 그 간담회가 결렬이 되었을 때에는 서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다. 1차적 목표는 간담회를 소집하자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될 수 있겠고 간담회 소집이 결렬이 되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는 형식을 채택을 하자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경경대 회장님께서 해주신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대표자분들께서는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인문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동의한다.

예술.정: 동의한다.

사범.정: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다. 요구안을 작성하고 학교 본부에 송부한다. 해당 요구안의 답변을 받기 위한 간담회 소집을 요구하고 간담회 소집이 결렬되었을 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

인문.정: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간담회를 할 때 녹음이라든지 기록 이런 게 가능하도록

총: 가능한 간담회여야 한다 무조건? 네 알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혹시 논의안건 2번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추가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이후의 대처는 학교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면 좋겠다.

통공.정: 의견이 있다. 저도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원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건 서면으로 질의를 보내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을 분명히 깔끔하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원안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자는 취지였다. 추가적으로 이제 간담회를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왜 질의를 그렇게밖에 안 줬는지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기본적으로 녹음은 학교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다 솔직하게. 녹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질의서에 왜 그렇게 부실하게 대답을 했나라는 내용을 간담회에서 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서면 후 간담회를 생각하고 왔었는데, 물론 제 의견은 녹음이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게 기반이 된 의견이다. 가능하다면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선 간담회 후 서면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도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린다.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부총: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간담회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에너지를 어떻게 더 적게 쏟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서면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해서 간담회를 열었을 때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학교가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

인문.정: 추가적인 보완책을 드리자면 혹시 간담회의 인원이 정해져있지만 거기서 서기를 추가로 학생대표자들이 대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다. 아니라면 지난번에 줌이라도 켜게 해 줬다. 그러니까 처음 간담회 했을 때, 두 번째에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줌 참여도 미리 얘기를 했으면 저는 됐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서기를 계속 해주신다든지 그러한 방안도 있을 것 같다.

총: 녹음, 줌 참여, 서기 참가 모든 방안을 고려하여 공문을 발행하도록 하겠다.

부총: 사실 이전에 비슷한 요청이 있을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다수 학생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총: 기타안건으로 넘어가겠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중운위 대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교학지원팀 학생경비 감축에 대해서 오늘 예산팀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예산팀의 입장은 이렇다. 예산팀이 등심위에서 결정된 학생 경비를 바탕으로 교지팀에 이번 연도 예산 규모는 이러니 학생경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내달라고 해서, 교학지원팀은 예산팀에 보낸 바가 있고, 예산팀은 확인했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따라서 교지팀이 왜 학생경비가 감축되었는지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아마 실무자, 담당자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단과대 대표자분들은 교학지원팀에 가서서 예산팀 공문을 확인해보시고 예산팀 공문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팀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발행하여 예산 규모와 계획, 예산이 배정된 경위에 대해 요청하면 성실하게 공문을 발행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요약하자면 교지팀 분들이 분명히 공문을 받았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되겠다. 또한 2학기에 대학 재정이 안정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 학사운영계획이 1단계나 0단계로 운영이 된다면 교학지원팀의 학생경비는 보존하겠다는 답변 받았다.

인문.정: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쭙보는 데, 교지팀에서 올해 학생경비를 보냈고 예산팀에서 그것에 맞게 준 것이라는 것인지?

총: 예산사용계획을 교지팀으로부터 요청을 했고 모든 교지팀의 계획안을 예산팀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교지팀이 모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예산팀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교지팀 가서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분명히 예산팀장님께서서는 교학지원팀 담당자분께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하고 계획을 수합한 적

이 있다 그래서 절대 모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상태다.

경경.정: 좀 확실히 하고자 한다. 그럼 우선적으로 예산팀에서는 이번 학생경비가 감축될 거라는 것을 교학지원팀에 말한 바가 없고, 예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예산팀은 그에 따라 예산을 줬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총: 우선 교학지원팀이 학생경비 뿐 아니라 모든 예산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예산안은 등심위에서 결정, 심의를 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지해주셨으면 한다.

경경.정: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축된 게 우선인지 교학지원팀에서 계획서를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되어서 온 것인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총: 회기가 지나기 전에 교학지원팀으로부터 이월요청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1년도 본예산안은 등심위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예산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제가 선후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예산팀이 교지팀에 어떤 말을 전했고, 교지팀이 예산팀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고, 다만 대표자분들이 교지팀에 찾아가셔서 예산팀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는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화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같다. 그러면 대표자분들이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정: 말씀 알겠다. 교지팀에 각각 가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등심위 예산안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예산안을 다룰 때 학생경비가 감축된 것인지?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다.

총: 등심위에서 말하는 학생경비는 총학생회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교학지원팀에서 사용하는 학생경비는 다른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내일 다 교지팀 찾아가 확인하고, 대화방 통해서 미팅 결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총: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으시다면 상정해주시고, 없다면 폐회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